

## [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 1. 지역사회협력촉진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가. 제정내용

### 지역사회협력촉진에관한규정

제정 2022.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범위는 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익산시, 전라북도 및 호남·제주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동의를 있을 경우 지역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3조(지역사회협력위원회)** ① 본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 및 학생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대한 수요 분석
2.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3.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대한 지원
4.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
5. 기타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 제공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주요업무 및 담당부서)** 지역사회 협력과 관련된 주요업무와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 기획조정처
2. 지역사회 협력 정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교무처
3. 본 대학 및 재학생들의 지역사회 협력 봉사활동 : 학생성공지원처
4. 지역사회 협력 대학 시설의 공유 : 총무처, 도서관
5. 지역사회 연계 평생학습 비학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 평생교육원
6. 기타 지역사회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단, 대외협력실, 국제교류처

제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의 관련규정에 따르며, 규정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교원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제25조(승진의 요건)의 교수 최소소요년한을 “8”에서 “7”로 하며, 교수 최소연구실적을 “600”에서 “500%”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기준 승진 임용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승진의 요건) ① 교원의 직급별 승진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5조(승진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구 분	최소 소요년한	최소 연구실적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구 분	최소 소요년한	최소 연구실적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교수	8	600%	1. 국제저명학술지(SCI, A&HCI, SSCI, SCIE) 2. 학술진흥재단등재지(후보지 포함) 3. 저서 4. 박사학위논문	교수	7	500%	(현행과 같음)
부교수	6	500%	5. 일반학술지(평가결과 “우”(80점)이상인 실적만 인정함) 6. 이러닝콘텐츠(원격수업 교과목, K-MOOC 등)	부교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② 연구실적 인정환산율은 1인 단독연구 또는 저서 100%, 2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70%, 3인 공동연구 또는 저서 50%,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저서 30%, 박사학위논문 200%로 인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③ 교수업적평가 점수는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현행	개정(안)
⑤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의전담교원,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의 연구실적물은 최대 100%까지 산학협력 실적물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⑤ (현행과 같음)
	<b>부칙</b>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 기준 승진 임용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2023년 9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 3. 원광보건대학교인권센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제3조(업무수행원칙) 제1항의 “간섭받지 간섭을 받지 않고”를 “간섭을 받지 않고”로 한다.
- “제5조(총장의 책무)”와 “제6조(예방교육)”을 삭제한다.
- “제7조(조직)”을 “제5조(조직)”으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2항 “센터는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제외) 등에 대한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 및 조사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둔다.”를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을 “성희롱·성폭력”으로 한다.
- “제8조(센터장)”, “제9조(센터 업무)”를 “제6조(센터장)”, “제7조(센터 업무)”로 조 변경한다.
- “제9조2(사이버신고센터)”를 “제7조2(사이버신고센터)”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1항의 “인권피해”를 “인권침해”로 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인권센터”로 하며, “적극”을 “적극적으로”로 한다.
- “제10조(구성)”을 “제8조(구성)”으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1항의 “이내의”를 “내외의”로 한다.
- 같은조 제3항의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1인, 총학생회 추천 학생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 전문가 1인과 총학생회 추천 학생 2인 등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 같은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을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은 “학생위원의 임기는”으로 한다.
- “제11조(기능)”을 “제9조(기능)”으로 조 변경한다.
- “제12조(회의)”를 “제10조(회의)”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2항의 “임사회”를 “임시회의”로 한다.
- “제13조(구성)”을 “제11조(구성)”으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에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한다.

- 같은조의 “제1항”을 “제2항”으로 항 이동하며, “인권위원회는”을 “당연직 위원은”으로 하고, “총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1인”을 “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내 전문가 1인,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하며”로 하며, “2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은 “2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으로 한다.
- 같은조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항 변경한다.
- 같은조의 “제3항”을 “제4항”으로 항 변경하며,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 같은조의 “제4항”을 “제5항”으로 항 변경하며, “2년으로 하되,”를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 “제14조(기능)”을 “제12조(기능)”으로 조 변경한다.
- “제15조(회의)”를 “제13조(회의)”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에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등 그 전반에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제2항”으로 이동한다.
- “제16조(위원의 제척 등)”을 “제14조(위원의 제척 등)”으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1항에 “4. 위원이 속한 학과나 부서가 당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사건 관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를 신설하고, 같은조 제5항의 “사건에 한하여”를 “사건만”으로 한다.
- “제17조(상담 및 신고)”, “제18조(신고의 각하와 철회)”, “제19조(임시조치)”, “제20조(조사 개시 및 처리)”를 “제15조(상담 및 신고)”, “제16조(신고의 각하와 철회)”, “제17조(임시조치)”, “제18조(조사개시 및 처리)”로 조 변경한다.
- “제21조(조사의 방법)”을 “제19조(조사의 방법)”으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학내부서”를 “관계부서”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의 “학내부서”를 “관계부서”로 한다.
- “제22조(회의의 진행 등)”을 “제20조(회의의 진행 등)”으로 조 변경한다.
- “제23조(구제조치 등)”을 “제21조(구제조치 등)”으로 조 변경하며,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제19조”를 “제17조”로 하고, “제25조”를 “제23조”로 한다.
- “제24조(불이익의 금지)”, “제25조(2차 피해 방지)”, “제26조(조정 등)”, “제27조(비밀유지)”, “제28조(경비)”, “제29조(지침)”, “제30조(협력의무)”, “제31조(상담, 조사 전용공간)”을 “제22조(불이익의 금지)”, “제23조(2차 피해 방지)”, “제24조(조정 등)”, “제25조(비밀유지)”, “제26조(경비)”, “제27조(지침)”, “제28조(협력의무)”, “제29조(상담, 조사 전용공간)”로 조 변경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수행원칙) ①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업무수행원칙) ① 인권센터는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u>간섭을 받지 않고</u>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현행	개정(안)
<p>②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등’의 조사, 심의,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한다.</p> <p>③ 인권센터는 전항의 사건 발생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p> <p>④ 인권센터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 관계인 등이 신고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5조(총장의 책무)</b> 총장은 법정 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등) 실시,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고충처리 절차의 마련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p>	<p><b>제5조(총장의 책무) &lt;삭 제&gt;</b></p>
<p><b>제6조(예방교육)</b> 총장은 매년 법정 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등)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p>	<p><b>제6조(예방교육) &lt;삭 제&gt;</b></p>
<p><b>제7조(조직)</b> ① 센터에 운영위원회, 인권위원회를 둔다.</p> <p>② 센터는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제외) 등에 대한 예방과 교육,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 및 조사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둔다.</p> <p>③ 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으로 남·여 각 1인을 지정하여 운영한다.</p> <p>④ 행정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p>	<p><b>제5조(조직)</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센터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과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각각 둘 수 있다.</u></p> <p>③ 센터는 <u>성희롱·성폭력</u> 고충상담원으로 남·여 각 1인을 지정하여 운영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b>제8조(센터장)</b>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센터장은 인권에 관한 식견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p> <p>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p>	<p><b>제6조(센터장)</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b>제9조(센터 업무)</b> 센터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3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li> <li>2.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육, 기타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li> <li>3.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4.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b>제7조(센터 업무)</b>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9조2(사이버신고센터)</b> ① 총장은 <u>인권피해</u>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u>인권상담센터</u>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대한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u>적극</u>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된 사실이나 내용은 담당자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만 열람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p>	<p><b>제7조2(사이버신고센터)</b> ① 총장은 <u>인권침해</u>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u>인권센터</u>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이에 대한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u>적극적으로</u>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0조(구성)</b>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u>이내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수행한다.</p> <p>③ <u>위원</u>은 센터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지원처장, 총무처장을 <u>당연직</u> 위원으로, 외부전문가 1인, 총학생회 추천 학생 2인을 <u>위촉직</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④ <u>당연직</u> <u>위원</u>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위촉직</u> <u>위원</u>은 1년으로 한다.</p>	<p><b>제8조(구성)</b>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u>내외의</u>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당연직</u> <u>위원</u>은 센터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지원처장, <u>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u> <u>위원</u>은 <u>외부 전문가 1인과 총학생회 추천 학생 2인</u> 등으로 구성한다.</p> <p>④ <u>위원</u>의 임기는 <u>당연직</u>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u>위원</u>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학생</u> <u>위원</u>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b>제11조(기능)</b>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센터 운영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2. 센터의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li> <li>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li> </ol>	<p><b>제9조(기능)</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ol>
<p><b>제12조(회의)</b>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u>임시회</u>는 다음 각 호일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li> <li>2. 위원장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때</li> </ol>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10조(회의)</b>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임시회의</u>는 다음 각 호일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2. (현행과 같음)</li> </ol> <p>③ (현행과 같음)</p>
<p><b>제13조(구성) &lt;신 설&gt;</b></p> <p>① <u>인권위원회</u>는 센터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지원처장, <u>총무처장을</u> <u>당연직</u>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 1인, 총학생회 추천 학생 2인을 <u>위촉직</u>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원</u>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② <u>당연직</u> <u>위원</u>을 제외한 <u>위원</u>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p>	<p><b>제11조(구성)</b> ① <u>인권위원회</u>는 <u>위원장 1인</u>을 포함하여 <u>9인</u> <u>내외의</u> <u>위원</u>으로 구성한다.</p> <p>② <u>당연직</u> <u>위원</u>은 센터장,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지원처장, <u>총무처장으로 하고, 위촉직</u> <u>위원</u>은 <u>전문적 지식이 있는 교내 전문가 1인, 외부 전문가 1인으로 하며, 총학생회</u> 추천 학생 <u>2인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은</u>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제1항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센터장에게 제13조의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대신하여 위원 중에서 1인을 추가하고 그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u>2년으로 하되</u>,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④ 제1항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센터장에게 <u>제14조</u>의 제척,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대신하여 위원 중에서 1인을 추가하고 그 위원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u>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p>
<p><b>제14조(기능)</b>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인권침해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li> <li>2.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징계 등 신분상 조치 권고를 위한 심의·의결</li> <li>3. 기타 인권침해 사건 등 사건처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li> <li>4.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한 총장 보고</li> </ol>	<p><b>제12조(기능)</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ol>
<p><b>제15조(회의) &lt;신 설&gt;</b></p> <p>인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b>제13조(회의)</b>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시, 장소, 회의록, 심의위원 명단 등 그 전반에 있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16조(위원의 제척 등)</b>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li> </ol>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②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조사 및 회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p> <p>③ 인권위원회는 기피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p>	<p><b>제14조(위원의 제척 등)</b>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li>4. <u>위원이 속한 학과나 부서가 당해 사건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u></li> <li>5. <u>그 밖의 사유로 당해 사건 관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u></li> </ol>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피하여야 한다.</p> <p>⑤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당해 <u>사건에 한하여</u>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당해 <u>사건만</u> 임시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p>
<p><b>제17조(상담 및 신고)</b> ① 피해자 또는 인권침해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신고는 서면, 이메일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나, 전화나 센터 방문 후 구두진술도 가능하다.</p> <p>③ 센터장은 제1항 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경우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및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가산한다.</p> <p>⑤ 센터는 한번 조사해서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p>	<p><b>제15조(상담 및 신고)</b> ①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8조(신고의 각하와 철회)</b>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하거나 사건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li> <li>2. 그 밖에 신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li> </ol> <p>② 센터장은 제1항의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p> <p>④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16조(신고의 각하와 철회)</b> ①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19조(임시조치)</b>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의 조사 및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 및 관계인 등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신고인에게 인권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li> <li>2. 피해자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피신고인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 조치</li> <li>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학내 위원회 활동 포함) 배제</li> <li>4.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li> </ol>	<p><b>제17조(임시조치)</b>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b> ① 센터장은 당사자가 신고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p> <p>②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p> <p>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조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⑤ 신고 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센터의 조사 및 처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p>	<p><b>제18조(조사개시 및 처리)</b> ① ~ ⑤ (현행과 같음)</p>
<p><b>제21조(조사의 방법)</b>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p> <p>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해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p> <p>2. 당사자, 관계인 또는 <u>학내부서</u>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p> <p>3. 당사자, 관계인 또는 <u>학내부서</u>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p> <p>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p> <p>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p>	<p><b>제19조(조사의 방법)</b>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당사자, 관계인 또는 <u>관계부서</u>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p> <p>3. 당사자, 관계인 또는 <u>관계부서</u> 등에게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b>제22조(회의의 진행 등)</b> ① 센터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사건 당사자에게 회의 일시와 위원회 구성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당사자 및 대리인은 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③ 센터장은 인권침해사건의 심의 결정문을 회의 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서면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b>제20조(회의의 진행 등)</b> 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23조(구제조치 등)</b> ① 위원회는 가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문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 결과 피신고인에게 법령 및 학내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제19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를 위반한 경우</li> <li>3. 사건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li> </ol> <p>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인권침해 결정과 함께 당사자와 유관부서의 장에게 다음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각서 제출</li> <li>2.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수</li> <li>3.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 금지 및 분리 조치</li> <li>4. 기타 인권침해 재발방지 혹은 예방을 위한 조치</li> </ol> <p>③ 위원회는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유관부서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 혹은 유관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리상담과 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p>	<p><b>제21조(구제조치 등)</b>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제17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를 위반한 경우</li> <li>3. (현행과 같음)</li> </ol>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4. (현행과 같음)</li> </ol>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24조(불이익의 금지)</b> 센터에 상담 및 신고 등의 이유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p>	<p><b>제22조(불이익의 금지)</b> (현행과 같음)</p>
<p><b>제25조(2차 피해 방지)</b> ① 센터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p> <p>②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자 등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들에게 회유 또는 보복 등을 하는 행위</li> <li>2.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li> <li>3. 그 밖의 「원광보건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서 명시한 2차 피해의 방법 등으로 피해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li> </ol> <p>③ 센터장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 또는 그 학내 기관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b>제23조(2차 피해 방지)</b>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현행과 같음)</li> </ol> <p>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b>제26조(조정 등)</b> ① 피해자가 인권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조정을 요청할 경우, 센터장 또는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담당자가 일차적으로 조정을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다.</p> <p>②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결과에 불복하거나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p>	<p><b>제24조(조정 등)</b> ① ~ ② (현행과 같음)</p>
<p><b>제27조(비밀유지)</b> 인권침해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 및 관계인의 동의 없이 이들에 관한 제반 자료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p>	<p><b>제25조(비밀유지)</b> (현행과 같음)</p>
<p><b>제28조(경비)</b>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한 외부위원에게는 별도의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인권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권 및 성폭력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는 전문교육 이수를 지원해야 한다.</p>	<p><b>제26조(경비)</b> ① ~ ③ (현행과 같음)</p>
<p><b>제29조(지침)</b> 센터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p>	<p><b>제27조(지침)</b> (현행과 같음)</p>
<p><b>제30조(협력의무)</b> 학내 모든 기관(부서)는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b>제28조(협력의무)</b> (현행과 같음)</p>
<p><b>제31조(상담, 조사 전용공간)</b>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상담 또는 조사를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고, 전용공간에는 상담 또는 조사담당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p>	<p><b>제29조(상담, 조사 전용공간)</b> (현행과 같음)</p>
	<p><b>부칙</b>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4.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법인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제1호의 “기업협업센터(ICC)”를 “기업협업센터(ICC), 공용 장비지원센터”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b>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설기관 :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ICC)</li> <li>2. 부설연구소 :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li> <li>3. 학교기업사업단</li> <li>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관련 사업단</li> <li>5.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li> </ol>	<p><b>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설기관 :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u>기업협업센터(ICC), 공용장비지원센터</u></li> <li>2. ~ 5. (현행과 같음)</li> </ol>
	<p><b>부 칙</b>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 5.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제7조(조직) 제1항 제11호의 “기업신속대응센터”를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로 한다.
- 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1항 제6호의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7조(조직)</b>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기획조정처, 교무처, 입학홍보처, 학생성공지원처, 국제교류처, 총무처, 산학협력단,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대외협력실 및 특별사업기구를 두며,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교당</li> <li>2. 기획조정처에는 기획조정팀, 평가관리팀을 둔다.</li> <li>3. 교무처에는 교무팀을 둔다.</li> <li>4. 입학홍보처에는 입학관리팀, 홍보전략팀을 둔다.</li> <li>5.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복지팀, 진로취업팀을 둔다.</li> <li>6. (삭제20200902)</li> <li>7. 총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을 둔다.</li> </ol>	<p><b>제7조(조직)</b>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7. (현행과 같음)</li> </ol>

현행	개정(안)
<p>8. 국제교류처에는 국제협력팀을 둔다.</p> <p>9. 비서실에는 의전팀을 둔다.</p> <p>10. (삭제20200902)</p> <p>11.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 학교기업사업단, <u>기업신속대응센터</u>를 둔다.</p> <p>12. (삭제20200902)</p> <p>13.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3.0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K-MOVE 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센터 등을 둘 수 있다.</p> <p>② 대학교당에는 교무자격을 가진 자를 교무로 보하고 대학교화를 주관한다.</p> <p>③ 제1항의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보하며 부서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부서 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LINC3.0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p> <p>④ 각 부서의 팀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p> <p>⑤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p>	<p>8. ~ 10. (현행과 같음)</p> <p>11. 산학협력단에는 사업진흥팀, 산학교육팀, 학교기업사업단, <u>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u>를 둔다.</p> <p>12. ~ 13.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b>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b>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p> <p>1. 교무처에는 학사학위센터를 둔다.</p> <p>2.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이력관리센터, 사회봉사단을 둔다.</p> <p>3. 국제교류처에는 한국어학당,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 해외출장소, 세종학당을 둔다.</p> <p>4. (삭제20200902)</p> <p>5. 입학홍보처에는 서울홍보관을 둔다.</p> <p>6. 산학협력단에는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u>현장실습지원센터</u>,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를 둔다.</p> <p>7. (삭제20200902)</p> <p>8. (삭제20170314)</p> <p>②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p>	<p><b>제80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b>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산학협력단에는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u>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u>,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를 둔다.</p> <p>7. ~ 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b>부칙</b></p> <p>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 (신 설)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p> <p>③ 산학교육팀에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학교육에 관한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li> <li>2. <u>사회수요 맞춤형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u></li> <li>3. <u>현장실무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u></li> <li>4. <u>LINC+ 현장실습에 관한 업무</u></li> <li>5. <u>LINC+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u></li> <li>6. 캠퍼스디자인 운영에 관한 업무</li> <li>7. 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에 관한 업무</li> <li>8. <u>가족회사 등 산업체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u></li> <li>9. 산업체 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li> <li>10. <u>산학협력 관련 업적관리 및 통계에 관한 업무</u></li> <li>11. <u>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u></li> <li>12. <u>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u></li> <li>13. <u>창의융합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u></li> <li>14. <u>산학 일체형 매장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u></li> <li>1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li> </ol>	<p>19. <u>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u></p> <p>20. <u>산학 일체형 매장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u></p> <p>21.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lt;삭 제&gt;</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lt;삭 제&gt;</li> <li>5. <u>산학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u></li> <li>6. (현행과 같음)</li> <li>7. (현행과 같음)</li> <li>8. &lt;삭 제&gt;</li> <li>9. (현행과 같음)</li> <li>10. &lt;삭 제&gt;</li> <li>11. &lt;삭 제&gt;</li> <li>12. (현행과 같음)</li> <li>13. (현행과 같음)</li> <li>14. &lt;삭 제&gt;</li> <li>15. (현행과 같음)</li> </ol>
	<p><b>부 칙</b>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7.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제6항의 “현장실습지원센터”를 “현장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b> 우리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교무처에는 학사학위센터, 교양교육센터를 둔다.</li> <li>② 학생성공지원처에는 학생상담센터, 인권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이력관리센터, 사회봉사단을 둔다.</li> </ol>	<p><b>제9조(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 ② (현행과 같음)</li> </ol>

현 행	개 정 (안)
③ 국제교류처에는 한국어학당, 원어민사업단, 글로벌교육센터, 해외출장소, 세종학당을 둔다. ④ (삭제20200724) ⑤ 입학홍보처에는 서울홍보관을 둔다. ⑥ 산학협력단에는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u>현장 실습지원센터</u> ,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를 둔다. ⑦ (삭제20200724) ⑧ (삭제20170314)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학협력단에는 기업신속대응센터, 창의융합교육센터, <u>현장 실습지원센터, 기업협업센터, 공용장비지원센터</u> , 학교기업사업단, 보건과학연구소, 간호과학연구소, 문화관광연구소를 둔다. ⑦ ~ ⑧ (현행과 같음)
	<b>부 칙</b>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 산학협력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제1조(목적)의 “이 규정은 학칙 제72조 및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우리 대학과 관련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체를 구성하여 산업체의 전문적 기술 인력과 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질 높은 기술인력 양성과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타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산학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산·학·연·관 공유·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 제5조(기능) 제1호의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을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발전 계획의 수립”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의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을 “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로 하고, 같은조 제3호의 “산업체의 학교교육 참여(겸임 교원 또는 강사)”를 “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며, 같은조 “제4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한다.
- 제6조(분과위원회) 제2항의 “산학협력위원”을 “학과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 및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를 “분과위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산학협력 발전전략에 기반한 학과의 산학협력 발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자체평가 및 환류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4항”을 삭제한다.
-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제2항의 “재적위원 3분의 2”를 “과반수”로 하며,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제9조(간사와 서기) 제2항의 “산학교육팀장”을 “사업진흥팀장”으로 한다.
- 제10조(경비)를 삭제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학칙 제72조 및 산업체위탁교육운영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우리대학과 관련 산업체간의 산학협력체를 구성하여 산업체의 전문적 기술 인력과 시설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질 높은 기술인력 양성과 산업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와 산업체정부 및 지방자치단체·타 연구기관 등과 유기적인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 산학연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산·학·연·관 공유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기능)</b>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추진하며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체제 확립</u></li> <li>2. <u>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개발</u></li> <li>3. <u>산업체의 학교교육 참여(겸임교원 또는 강사)</u></li> <li>4. <u>학생의 현장실습 협력에 관한 사항</u></li> <li>5. <u>기술교육 협력에 관한 사항</u></li> <li>6. <u>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u></li> </ol>	<p><b>제5조(기능)</b>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발전계획의 수립</u></li> <li>2. <u>대학의 전반적인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환류</u></li> <li>3. <u>기타 산학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u></li> <li>4. &lt;삭 제&gt;</li> <li>5. &lt;삭 제&gt;</li> <li>6. &lt;삭 제&gt;</li> </ol>
<p><b>제6조(분과위원회)</b> ① 위원회는 학과별로 산업체 및 각 학과 교수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p> <p>② 각 학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학과의 <u>산학협력위원</u>으로 하며,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p> <p>③ <u>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의 추진 및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한다.</u></p> <p>④ <u>분과위원회는 학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하여 산학협력계획 수립 및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한다.</u></p>	<p><b>제6조(분과위원회)</b>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각 학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학과의 <u>학과장</u>으로 하며, 분과위원은 각 분과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위촉한다.</p> <p>③ <u>분과위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산학협력 발전 전략에 기반한 학과의 산학협력 발전 및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 자체평가 및 환류를 수행한다.</u></p> <p>④ &lt;삭 제&gt;</p>
<p><b>제7조(회의소집과 의결)</b>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 위원회는 <u>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u>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u>의장이 결정권을</u> 갖는다.</p>	<p><b>제7조(회의소집과 의결)</b>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u>과반수</u>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u>위원장이 결정권을</u> 갖는다.</p>
<p><b>제9조(간사와 서기)</b>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둔다.</p> <p>② 간사는 <u>산학교육팀장</u>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p><b>제9조(간사와 서기)</b> ① (현행과 같음)</p> <p>② 간사는 <u>사업진흥팀장</u>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p>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 산학협력추진사업을 위한 경비는 우리대학의 예산과 산업체의 산학협동 추진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경비) <삭제>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기업협업센터(ICC)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내용

기업협업센터(ICC)운영규정

제정 2022.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특화분야와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기관)과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원광보건대학교 기업협업센터(ICC, Industry coupled Cooperation Center)(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대학의 특화 분야와 연계하여, 스마트농식품 ICC, 3D-덴탈디자인 ICC, AI재활 ICC로 구성한다.

- ② 각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③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각 센터는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산학연관 ICC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각 센터는 특화분야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기업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2. 산학협력교육 지원
- 3.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 ICC기반 인프라 구축 지원
- 5. 원스톱 기업 지원
- 6. 공유 및 협업 활동 지원
- 7. 산학연관 ICC 협의체 운영 지원
- 8.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1명의 간사를 두어 회의를 진행한다.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결정
2. 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학연관 ICC 협의체)**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센터 산하에 산학연관 ICC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 ② 각 협의체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각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1명의 간사를 두어 회의를 진행한다.
-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각 센터 산학연관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각 센터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환류
  3.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타)** 기업협업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공용장비지원센터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가. 제정내용

## 공용장비지원센터운영규정

제정 2022.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의 첨단 기자재의 공동 활용 및 지원을 통해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의 산학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원광보건대학교 공용장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용장비 활용, 지원, 관리
2. 공용장비 관련 교육 및 세미나 개최
3. 기타 센터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과 활동

**제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직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1명의 간사를 두어 회의를 진행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결정
2. 센터의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규정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 가족회사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가. 제정내용

## 가족회사운영규정

제정 2022. 00.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가족회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가족회사”라 함은 본 대학과 현장실습 및 취업,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공동연구, 교육프로그램, 공용장비 이용 등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본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를 말한다.

② “산업체”란 본 대학과 협력이 필요한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역할)** 가족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회사 가입신청 접수, 승인, 탈퇴 및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학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 공용장비, 기업지원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및 자문에 관한 사항
5. 기업 현장실습(인턴십) 등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에 관한 기술정보 수집 및 기획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 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학협력 관련 제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가입 및 해지)** ① 가족회사 가입을 희망하는 산업체는 산학협력단에 가족회사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 신청에 따른 산업체의 정보를 확인 후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 협약에 의거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③ 가족회사가 탈퇴하고자 할 경우 또는 휴·폐업으로 확인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가족회사를 탈퇴 처리한다.

④ 가족회사가 불미스러운 사항으로 인하여 명예를 실추하여 본 대학과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경우 별도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기타 협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회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가족회사에 대한 지원)** 가족회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및 경영 자문, 공동연구
2. 공용장비의 이용
3. 산학연 취업, 현장실습, 인턴십 등
4. 산학연 공동 교육 및 기술교류
5. 기타 산학협력 활동 및 사업

**제6조(가족회사 권리 및 의무)** ① 가족회사는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가족회사는 산학협력단의 가족회사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가진다.

**제7조(정보보호)** 산학협력단은 가족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로 이를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가족회사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가족회사 협약이 체결된 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가족회사로 협약된 것으로 본다.

## 12. 평생교육원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가. 개정내용

- 제16조(학습비) 제2항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를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 제22조(예산편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6조(학습비)</b> ① 교육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학습비의 반환은 <u>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중 수업료 등의 반환규정을 준용한다.</u></p>	<p><b>제16조(학습비)</b> ① (현행과 같음)</p> <p>② 학습비의 반환은 <u>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u></p>
<p><b>제22조(예산편성)</b> 원장은 대학의 본예산 편성시기에 따라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u>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b>제22조(예산편성)</b> 원장은 대학의 본예산 편성시기에 따라 다음해 예산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u>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u></p>
	<p><b>부 칙</b>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